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서면심의 증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비가림 시설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안 제37조)

- 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기준을 변경함

다. 비가림시설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조항 신설(안 39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출석한 위원”을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를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를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거리는 영 제86조제1항 각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가림시설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한 경우
4. 비가림시설 위반건축물을 추진신청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u>출석한</u> 위원과 제7조에 따라 <u>출석한</u>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u>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u> ----- <u>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u> ----- ----- -----.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u>납부하여야</u>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 ----- ----- ----- ----- ----- ----- <u>내야</u> ----- -----. ----- -----.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 ----- -----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③ (생략)

제39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생략)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③ · ④ (생략)

-----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거리는 영 제86조제1항 각호로 한다.

<삭제>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비가림시설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한 경우

4. 비가림시설 위반건축물을 추진신청한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소 관 부 서		건 축 과
입 안 자	과 장	장 재 덕
	팀 장	심 종 진
	담 당 자	정 원 희 (480-5512)